

2024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3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

■ 일 시 : 2024. 3. 27.(수), 14:00~

■ 장 소 : 문화재청 대회의실

문 화 재 위 원 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1	「고흥 팔영산」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	
2	「용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」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3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	
3	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 내외 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 건설공사(노선승인)	
4	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 내외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	
5	「제주연안 연산호 군락」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	
6	「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」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변경	
7	「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」 주변 강정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	
8	「단양 고수동굴」 내 와이파이(Wi-Fi) 중계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	
9	「제천 의림지와 제림」 주변 경관조명 설치	
10	「연천 재인폭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 마련	
11	「고창 병바위 일원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 마련	
12	「창녕 남지 개비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	

【검토사항】

13	「신안 만재도 주상절리」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 지정 검토	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【보고사항】

14	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(건수 64건)	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심 의 사 항

1. 「고흥 팔영산」 국가지정문화재(명승) 지정

가. 제안사항

「고흥 팔영산」의 국가지정문화재(명승)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
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고흥 팔영산」의 자연유산 명승 지정을 심의하는 사항임
- 추진경과
 - '22. 3.15. 「고흥 팔영산 능가사 일원」 명승 잠재자원 신청
 - '23.10.19. 「고흥 팔영산」 명승 지정 관계전문가 지정조사
 - '24.1.24. 문화재위원회 검토 / 원안가결
 - '24.2.19.~'24.3.18.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(관보공고)
- * 예고기간 내 이해관계자 의견 5건 접수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*****

(2) 신청내용

- 지정명칭 : 고흥 팔영산
 - (한문)高興 八影山
 - (영문) Paryeongsan Mountain, Goheung
- 지정종별 : 명승(자연명승)
- 소재지 :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강산리 산189-1번지 일원
- 문화재지정구역 : 92필지, 6,515,923㎡
- 지정사유
 - 고흥 10경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고흥 팔영산은 산 정상부 능선에 병풍처럼 이어진 여덟개의 거대한 기암괴석 봉우리가 웅장한 경관을 이루고 각 봉우리에서 아름다운 다도해 해양풍경과 고흥반도의 산야를 조망할 수 있는 명소임.
 - 팔영산과 여덟 봉우리는 각각 그 명칭의 유래와 수려한 경관 등을 자랑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, 고려시대 왜적의 침입을 피해 피난했던 자연동굴과 항일의병 전적지인 만경암지, 깃대봉 봉수터 등 역사유적도 남아있어 역사적·문화적 가치가 높은 명승지임.

2. 「웅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」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3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「웅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」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3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웅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」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33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 - 기존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'21년부터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'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' 연구용역 결과 반영
- 주요경과
 - '21~'22년 경기, 인천, 부산, 강원, 제주 등 11개 광역시·도 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(보존정책과)
 - '22.10.12./'23.4.3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추진 요청(문화재청→대상 시·도)
 - '22.11.30.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
 - '22.10~'23.8. 대상문화재별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추진 요청
 - '23.9.~ 대상 지자체 허용기준 검토, 조정 및 행정 예고
 - '23.12.28. 「서울 신림동 굴참나무」 등 73건 허용기준 조정 고시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** 등 14인
- (2) 대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「웅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」 등 33건
- (3) 신청내용 : 천연기념물 및 명승 3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3. 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 내외 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 건설공사(노선승인)

가. 제안사항

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 내외 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 건설공사(노선승인)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 내외 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 건설공사(노선승인)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, 2018년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'18.04.25)에서 '사업 예정 노선 승인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후 전면 재검토'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
- 추진경과
 - 2017.08.30. : 2017년도 제8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부결)
 - 2018.04.25. : 2018년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보류)
 - 2018.05.16. : 전문가 현지조사 실시
 - 2018.05.25. : 2018년도 제5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조건부허가)
 - 2024.01. :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
 - 2024.03.19. : 전문가 현지조사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*
- (2) 대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「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」
 - 소재지 : 부산광역시 강서구, 사하구, 사상구 일원
 - 지정일 : 1966. 7. 23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명 : 식만~사상간(대저대교) 도로 건설공사(노선승인)
 -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(식만JCT) ~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
 - 사업내용
 - 본선연장 L=8.24km, 폭원 B=20.0m, 왕복 4차로, 장대교 3개소 및 소교량 4개소
 - 사업기간 : 허가일로부터 ~ 66개월
- (4) 문화재와의 거리 : 문화재구역 내외(문화재구역~허용기준 5구역)

4. 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 내외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

가. 제안사항

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 내외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 내외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
 - 2016.11.23. : 2016년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부결)
 - 2016.11.29. 불허 통보
 - 2023.09.~2024.02. : 을숙도 내 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확인 및 관련 현황 파악, 원상회복 및 후속조치 등
 - 2024.02.14. :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
 - 2024.03.19. : 전문가 현지조사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**
- (2) 대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「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」
 - 소재지 : 부산광역시 강서구, 사하구, 사상구 일원
 - 지정일 : 1966. 7. 23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명 :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
 -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9-2, 1149-5, 1149-3, 1150-2, 1150-8번지(을숙도)
 - 사업내용 : 길고양이 급식소(45cm×45cm×30cm) 16개소 설치
 - 사업기간 : 2024년 3~4월
- (4) 문화재와의 거리 : 문화재구역 내외(문화재구역~허용기준 2구역)

5. 「제주연안 연산호 군락」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

가. 제안사항

「제주연안 연산호 군락」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제주연안 연산호 군락」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2024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'24. 2. 28.)에서 '연산호 군락 마찰(훼손) 가능성 해소 방안과 운항기록 및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방안 등 보완 후 재검토'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
- 추진경과
 - 2023.11.06. :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
 - 2023.12.01. : 현지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
 - 2023.12.13. : 2023년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부결)
 - 2023.12.15. :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불허 통보
 - 2024.02.05. : 현상변경 허가 신청
 - 2024.02.16. : 전문가 현지조사
 - 2024.02.28. : 2024년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보류)
 - 2024.03.07. : 보완자료 제출
 - 2024.03.21. : 전문가 현지조사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**(*)
- (2) 대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「제주연안 연산호 군락」
 - 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-1 외
 - 지정일 : 2004.12.13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명 :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
 - 사업위치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일원
 - 사업내용 : 잠수함 운항
 - 사업기간 : 허가일로부터 ~ 2025. 12. 31.
- (4) 문화재와의 거리 : 문화재구역 내

6. 「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」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변경

가. 제안사항

「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」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방류구 위치 조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」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방류구 위치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2024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'24. 2. 28.)에서 '보완 제출된 '배출구 한강 유입 시 수질 확산 시뮬레이션'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 및 전문가 보완 설명 후 재검토'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
- 추진경과
 - 2023.09.1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변경 허가신청
 - 2023.09.20 제8차 문화재위원회 심의(보류)
 - 2024.01.31. 보완자료 제출/ 2024.02.07. 전문가 현지조사 실시
 - 2024.02.28. 제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(보류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*
- (2) 대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「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」
 - 소재지 :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538 등
 - 지정일 : 1975. 2. 25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명 :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(방류구 위치 변경)
 - 사업위치 :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1298번지 일원
 - 사업내용
 -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($Q=10,000\text{m}^3$), 간선 및 방류관로=9.8km
 - 방류구 위치를 기존 문발배수펌프장 유수지에서 공릉천 범흥배수장으로 변경
 - 사업기간 : 허가일로부터 ~ 2026. 4. 30.
- (5) 문화재와의 거리 : 문화재구역과 인접(허용기준 1~5구역)

7. 「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」 주변 강정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

가. 제안사항

「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」 주변 강정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」 주변 강정 위험도로의 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교량 재가설 등 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업임. 2021년 10차 문화재위원회('21.10.27.)에서 '제주 도순리 녹나무 관련 연구용역 결과 확인 후 재검토'하기로 보류된 사항으로 용역완료 후 재신청한 사항임.
- 추진경과
 - '21.10.13.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외 위험도로 선형개량 허가 신청
 - '21.10.27. 2021년 10차 문화재위원회(보류)
 - '21.5.26.~'22.12.19.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
 - '23.1.27.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구역 조정
 - '24.1.11. 강정 위험도로 선형개량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**
- (2) 대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「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」
 - 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번지 외
 - 지정일 : 1964.1.30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명 : 강정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
 - 사업위치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번지 일원
 - 사업내용 : 도로선형 개선, 정비 : 420.0m
 -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24개월
- (4) 문화재와의 거리 : 문화재구역에서 290m 이격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, 2, 3구역)

8. 「단양 고수동굴」 내 와이파이(Wi-Fi) 중계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

가. 제안사항

「단양 고수동굴」 내 와이파이(Wi-Fi) 중계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단양 고수동굴」 내 와이파이(Wi-Fi) 중계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. 참고로 동 건물은 2023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'23. 12. 13.)에서 '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'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조정 및 보완하여 재신청함
 - 와이파이(Wi-Fi) 중계기 설치 감 (24곳 → 16곳)
 - 비상벨 설치 취소 (9곳→ 0곳)
 - 와이파이(Wi-Fi)와 박쥐 생태 영향 여부 및 안전사고 대책 보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(*)**** *****
- (2) 대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「단양 고수동굴」
 - 소재지 : 충청북도 단양군 고수리 산4-2번지 외
 - 지정일 : 1976. 9. 24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명 : 와이파이(Wi-Fi) 중계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
 - 사업위치 : 충청북도 단양군 고수리 산4-2번지 외
 - 사업내용 : 와이파이 모뎀 6곳, 와이파이 중계기 16곳, QR코드판 12곳, 안전시설물 21곳 설치
 - 사업기간 : 허가일로부터 ~ '24. 3. 31.까지
- (4) 문화재와의 거리 : 문화재구역 내

9. 「제천 의림지와 제림」 주변 경관조명 설치

가. 제안사항

「제천 의림지와 제림」 주변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제천 의림지와 제림」 주변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2024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('24.2.28.)에서 부결된 사항을 보완 (경관조명 설치 개소 및 조도 감축)하여 재신청함
 - 불허사유 :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**
- (2) 대상문화재 : 제천 의림지와 제림
 - 소재지 :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
 - 지정일 : 2006.12.4.
- (3) 신청내용
 - 사업명 : 의림지 신타이봉 미디어 콘텐츠 구축사업
 - 사업위치 :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산14-4번지 일원
 - 사업내용 : 조명 설치, 목재난간 설치 등
 - 사업기간 : 허가일로부터 ~ 2024. 12.까지
- (4) 문화재와의 거리 :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(1, 2구역)

10. 「연천 재인폭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

가. 제안사항

「연천 재인폭포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명승 「연천 재인폭포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
- 추진경과
 - ('24.2.19.~3.10.) 명승 「연천 재인폭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이해관계자 의견조회
 - * 예고기간 내 이해관계자(국방부, 한국수자원공사) 의견 2건 접수
 - ('24.3.20.) 명승 「연천 재인폭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제출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
- (2) 대상문화재 : 명승 「연천 재인폭포」
 - 소재지 :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235번지 등
 - 지정일 : 2023. 8. 8.
- (3) 신청내용 : 명승 「연천 재인폭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

구분	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1구역	○ 개별검토
3구역	○ 연천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공통 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

11. 「고창 병바위 일원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

가. 제안사항

「고창 병바위 일원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명승 「고창 병바위 일원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
- 추진경과
 - ('24.1.22.~2.14.) 명승 「고창 병바위 일원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이해관계자 의견조회
 - * 예고기간 내 이해관계자(마을주민) 의견 2건 접수
 - ('24.2.21.) 명승 「고창 병바위 일원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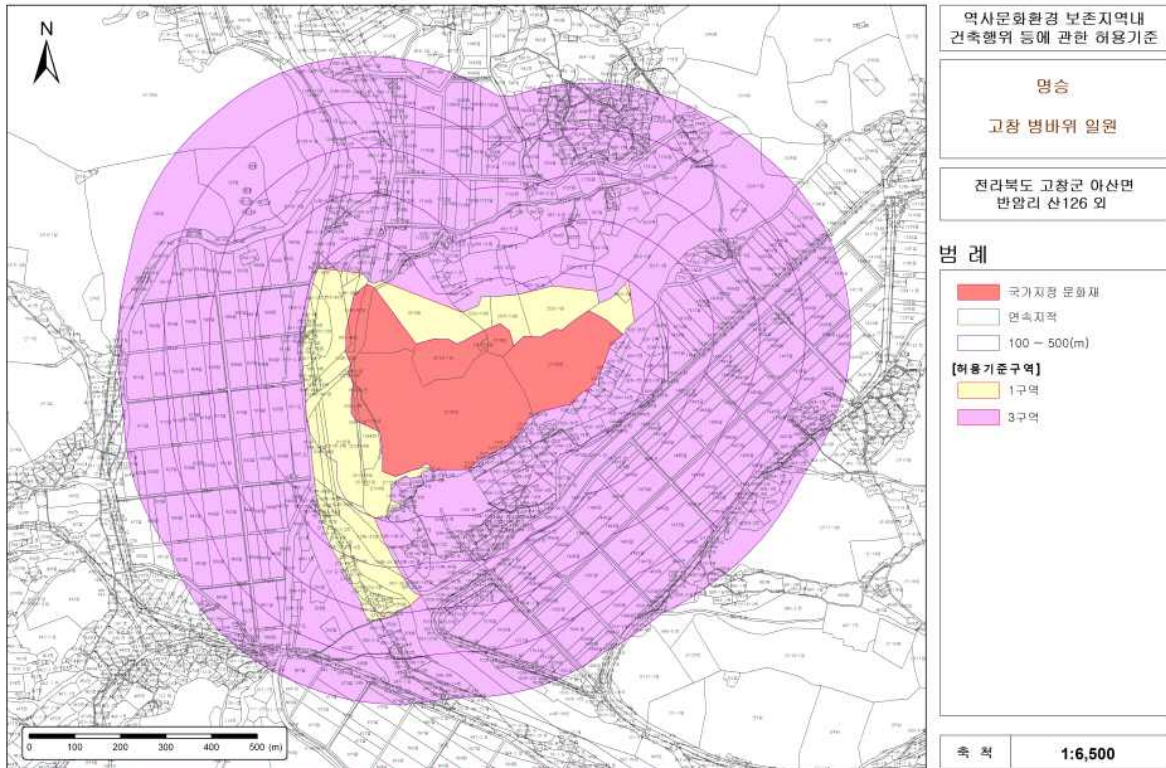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***
- (2) 대상문화재 : 명승 「고창 병바위 일원」
 - 소재지 :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번지 등
 - 지정일 : 2021.12.6.
- (3) 신청내용 : 명승 「고창 병바위 일원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

구분	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1구역	○ 개별검토
3구역	○ 고창군 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공통 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

개별 검토함.

-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
-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
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-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.
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
-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출반하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12. 「창녕 남지 개비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

가. 제안사항

「창녕 남지 개비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창녕 남지 개비리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
- 추진경과
 - ('24. 1.18.~2.16.) 명승 「창녕 남지 개비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이해관계자 의견조회
 - ('24. 2.15.) 명승 「창녕 남지 개비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
 - ('24. 3. 4.) 명승 「창녕 남지 개비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 기준안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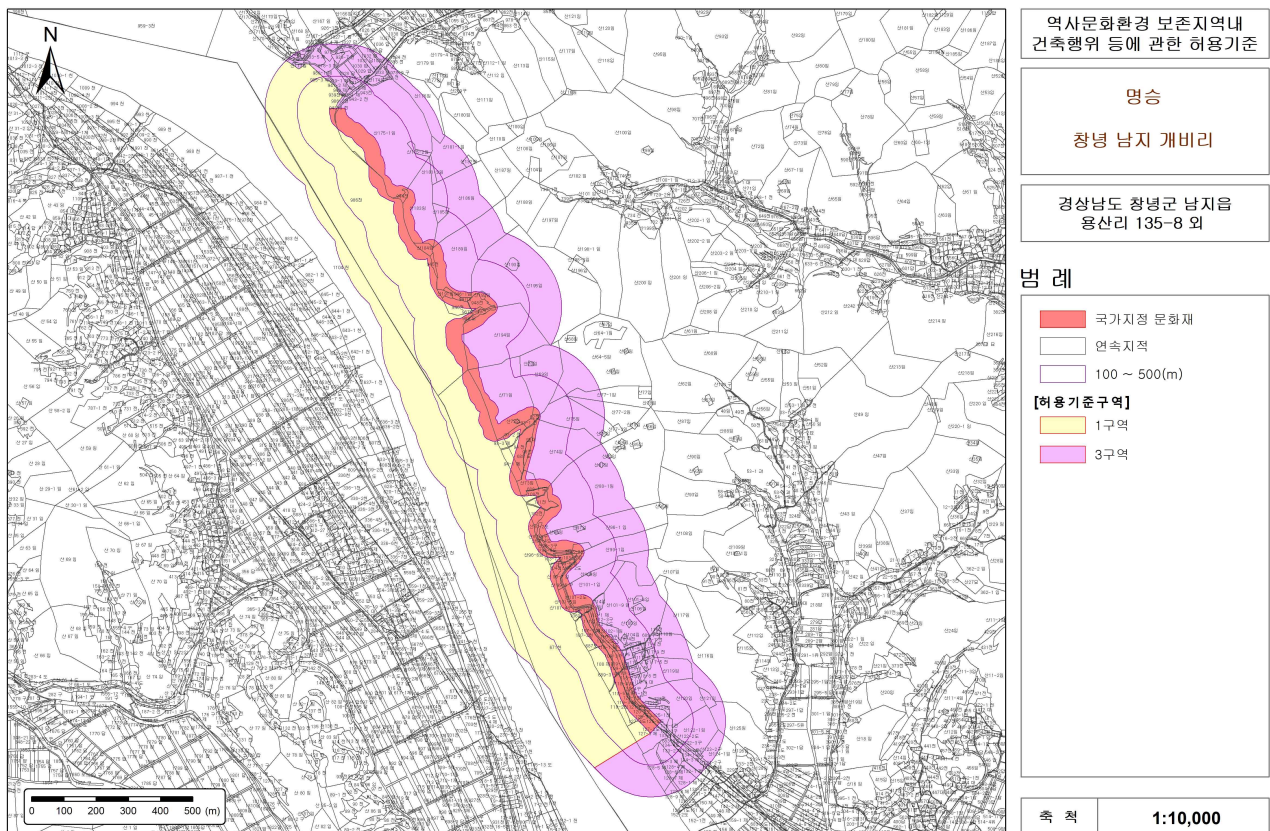
다. 주요내용

- (1) 신 청 인 : *****
- (2) 대상문화재 : 명승 「창녕 남지 개비리」
 - 소 재 지 :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88
 - 지 정 일 : 2021. 12. 8.
- (3) 신청내용 : 명승 「창녕 남지 개비리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 마련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)
1구역	○ 개별검토	
2구역	○ 창녕군, 의령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보수를 허용함	
	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	
	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	

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

-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
- 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(단, 평지붕 6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
-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
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
-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, 빗 또는 열을 방출하는 시설 등은 개별검토
-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



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검 토 사 항

13. 「신안 만재도 주상절리」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 지정 검토

가. 제안사항

「신안 만재도 주상절리」를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로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신안 만재도 주상절리」의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
- 추진경과
 - 2023. 8. 30. 천연기념물(지질) 우수 잠재자원 조사 계획
 - 2023. 9. 11. 천연기념물(지질) 지정조사
 - 2024. 2. 27. 천연기념물(지질) 지정구역 확정
 - 2024. 3. 11.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제출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*****

(2) 신청내용

- 지정명칭 :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
 - (한자) 新安 晩才島 柱狀節理
 - (영문) Columnar Joint in Manjeado Island, Sinan
- 지정종별 : 천연기념물(지형·지질)
- 소재지 :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산100번지 일원
- 문화재지정구역 : 17필지 및 공유수면 / 181,729m²
- 소유자 : 사유 등
- 지정사유
 - 부석편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는 고온과 압력에 의해 형성되는 용결조직이 암체 전반에 걸쳐 선명하고 고르게 관찰되고 있으며, 화산활동에 따라 간격과 방향을 달리하여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
 - 만재도의 해안경관을 이루는 주상절리는 섬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단면과 수직면이 모두 관찰되는 등 형태도 우수할 뿐 아니라 파도와 바람의 작용으로 형성된 연안의 해안침식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적 가치도 높음
- 관리단체(안) : 전라남도 신안군

보고 사항

14.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

가. 보고사항

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.

-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.(64건)